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(향정)·공용물건 손상

[부산지방법원 2012. 6. 29. 2012고단3765]

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

【검 사】오재현(기소), 정영서(공판)

【변 호 인】변호사 윤여진(국선)

【주문】

1

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.

피고인으로부터 100,000원을 추징한다.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]

[이유]

]

【이유】

1